ESG snapshot

지주회사/통신/ESG. 최관순

중복상장을 위한 조건 명시한 자본시장법 발의

2026-09-18

·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9월9일 중복상장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모회사 주주의 권익 보호장치를 담은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』을 발의했음

· 최근 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서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

· 발의안에 따르면 모회사의 종속회사 등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,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조치를 의무화하였음

· 중복상장은 지배주주 중심의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특히 지주회사 할인율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· 기업의 자금조달 위축 가능성은 고려해 봐야하며 모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

코스피 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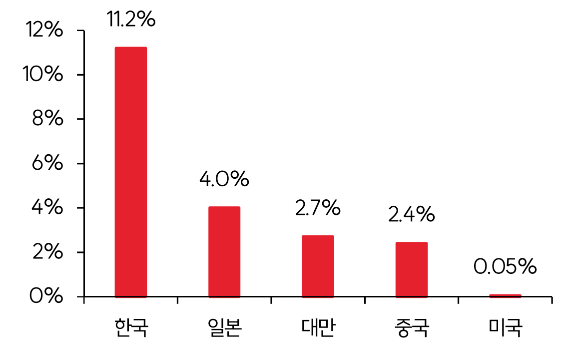

자료: 금융위원회

국내 지주회사, 자회사, 손자회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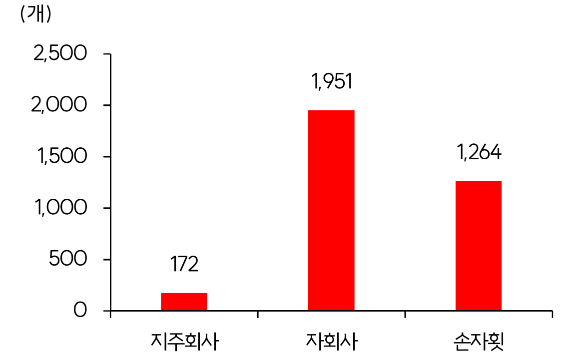

자료: 기업지배구조포털, SK증권

주: 상장 및 비상장 포함

지주회사 합산 NAV 대비 할인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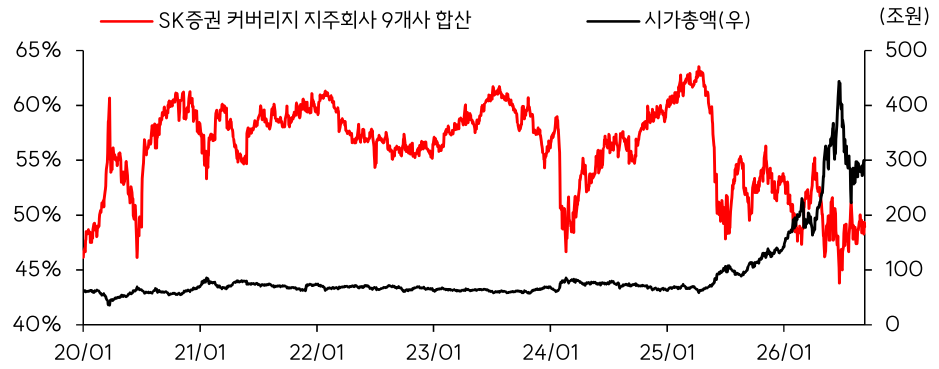

자료: SK증권

주:SK, SK스퀘어, 삼성물산, LS, 한화, CJ, LG, 현대지에프홀딩스, 롯데지주 합산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(최관순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투자판단 3단계(6개월기준) 15%이상 > 매수 / -15%~15% > 중립 / -15%미만 > 매도